

청주지방법원 2022. 2. 17 선고 2021나5028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2. 2. 17 선고 2021나50288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20. 12. 18 선고 2019가단11166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권

피고, 피항소인 B

변론종결 2021. 12. 16.

판결선고 2022. 2. 17.

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0. 12. 18. 선고 2019가단11166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3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1. 19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오태환, 판사 최유나, 판사 이성기